

의안번호	2206266
의 퇴 인	윤재옥 의원
회 답 일	2025. 1. 13.
추 계 번호	24B572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1조의2 (토지와 시설등의 귀속 등) 신설	「공항시설법」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공항시설법」 제7조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 총 사업비 중 공사가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은 준공 시 공사에 귀속함.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할 토지와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사가 국가나 제3자와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공사가 직접 시행하지 않더라도 재원을 부담한 경우에는 공사가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에 한하여 공사에 귀속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1조의2 (토지와 시설등의 귀속 등)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토지와 시설등의 한국공항공사 귀속 등(안 제11조의2 신설)

○ 개정안은 「공항시설법」 제21조제2항¹⁾에도 불구하고, 한국공항공사(이하

1) 「공항시설법」 제21조(투자허가·시설물의 귀속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그 밖의 시설(공항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공사”라 함)가 「공항시설법」 제7조²⁾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 총 사업비 중 공사가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은 준공 시 공사에 귀속시키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할 토지와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되 공사가 국가나 제3자와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공사가 직접 시행하지 않더라도 재원을 부담한 경우에는 공사가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에 한하여 공사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임

- 현행 「공항시설법」 제6조³⁾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개발사업과 관계된 토지 및 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음

– 다만, 공항시설 중 공항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개발 가능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공항개발사업 시행자는 국가였으나,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개정⁴⁾(’14.11.) 등에 따라 공사가 공항개발사업에

② 제1항 후단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조건이 붙은 허가를 받아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해당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조건이 붙지 아니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토지 및 공항시설은 해당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한다.

- 2) 「공항시설법」 제7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① 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 「공항시설법」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의 개량 등에 관한 개발사업 중 일상적인 유지·보수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2. 해당 개발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해당 개발사업과 관계된 토지 및 시설(공항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 4)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항공기, 여객·화물처리시설 및 공항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신설·증설·개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제9조(사업) ①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증설 및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항의 시설

참여하고 비용을 분담하기로 함

-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신공항 개발사업 중 울릉공항 등에는 공사가 참여 중
- 공사가 「공항시설법」 제7조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 중 공사가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의 현황은 2023년 준공 기준 36건, 투자사업비 289억원 등이고(붙임 [참고자료] 참조), 해당 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서는 「공항시설법」 제22조제1항⁵⁾에 따라 공사가 투자한 총 사업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

- 개정안은 공사가 공사 재원으로 조성한 토지·시설 등의 소유권을 국가가 아닌 공사에 귀속하도록 하는 것으로, 향후 국가로 귀속될 수 있는 국유재산의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개정안 부칙의 적용례⁶⁾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법 시행 이후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이 준공되어 국가로 귀속될 수 있는 국유재산의 감소 및 국유재산 사용료 수입 감소 등의 규모를 특정하기 어려워 합리적인 수입감소 추계에 한계가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나. 새로 건설하는 공항의 시설로서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2.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나목의 경우에는 운항관리시설, 교육훈련시설 및 소방시설만 해당한다)

- 5) 「공항시설법」 제22조(사용·수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투자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시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시설을 그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인천국제공항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한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6) 안 부칙 제2조(토지와 시설등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이 준공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한국공항공사 공항개발사업 국가귀속 준공시설물(2023년 준공)

(단위: 백만원)

연번	공항명	위치	자산내역	수량 (면적)	단위	자본화일	투자 사업비
1	김포공항	A/S	김포공항 유도로안내등	149	식	2023-01-19	989
2	김포공항	A/S	김포공항 유도로중심선등	76	식	2023-01-19	248
3	김포공항	A/S	김포공항 일시정지위치등	6	식	2023-01-19	55
4	김포공항	A/S	김포공항 유도로등	22	식	2023-01-19	28
5	김포공항	A/S	김포공항 활주로중심선등	10	식	2023-01-19	5
6	김포공항	A/S	김포공항 접지구역등	61	식	2023-01-19	28
7	김포공항	A/S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조명탑	1	개	2023-01-27	153
8	김포공항	A/S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조명탑(LED 투광등 1kW)	3	개	2023-01-27	12
9	김포공항	A/S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조명탑(LED 투광등 500W)	10	개	2023-01-27	23
10	김포공항	A/S	김포공항 위험물 옥외저장소(콘크리트패드)	64	m ²	2023-02-27	26
11	김포공항	A/S	김포공항 위험물 옥외저장소(울타리)	40	m ²	2023-02-27	11
12	김포공항	A/S	김포공항 위험물 옥외저장소(유수분리기)	1	개	2023-02-27	5
13	김포공항	A/S	김포공항 위험물 옥외저장소(살수시설)	1	개	2023-02-27	1
14	김해공항	L/S	P1여객주차장 CCTV카메라	20	개	2023-01-12	48
15	김해공항	A/S	국제선 사각지대 CCTV(좌측)	1	개	2023-07-08	3
16	김해공항	A/S	국제선 사각지대 CCTV(우측)	1	개	2023-07-08	3
17	김해공항	A/S	관제탑 방송시스템	1	개	2023-08-18	76
18	김해공항	L/S	P2주차빌딩 CCTV(국가귀속)	1	개	2023-10-06	43
19	제주공항	A/S	외곽보안등 및 전력케이블(국유재산)	1	식	2023-01-16	1,936
20	제주공항	A/S	이동지역 운행차량 안전검사장	132.4 60	m ²	2023-03-28	419
21	제주공항	A/S	경찰항공대 격납고 시설개선	8.550	m ²	2023-12-12	504

연번	공항명	위치	자산내역	수량 (면적)	단위	자본화일	투자 사업비
22	무안공항	L/S	무안공항 여객터미널 시설재배치 공사	1	개	2023-03-21	14,490
23	무안공항	A/S	무안공항 항공등화시설 교체사업	1	개	2023-03-29	869
24	무안공항	A/S	무안공항 매립 활주로등 개량공사	1	식	2023-07-27	106
25	울산공항	A/S	울산공항 항공등화시설 보수보강 및 기타공사	1	개	2023-01-21	448
26	여수공항	L/S	여수공항 운항안내 방송설비	1	식	2023-02-23	459
27	여수공항	L/S	여수공항 전자교환기(IP-PBX)	1	식	2023-02-23	117
28	포항경주 공항	A/S	울진비행장 항공정보통신시설(VCCS/Radio 등) 현대화 장비	1	개	2023-01-02	2,161
29	포항경주 공항	A/S	울진비행장 비행장등대	1	개	2023-02-24	14
30	사천공항	L/S	사천공항 CCTV 구매설치	1	식	2023-11-21	60
31	원주공항	A/S	원주공항 민항계류장 조명탑(20M, 레일 승하강식)	1	개	2023-01-27	67
32	원주공항	A/S	원주공항 민항계류장 조명탑 조명등(LED 투광등기구)	6	개	2023-01-27	17
33	원주공항	A/S	원주공항 민항계류장 조명탑 제어반	1	개	2023-01-27	8
34	원주공항	A/S	원주공항 민항계류장 조명탑 안전보호대	1	개	2023-01-27	5
35	항로시설 본부(인천)	A/S	제주표지소 전방향/전술항행표지시설(VOR/T AC) 현대화	8	식	2023-02-17	3,765
36	항로시설 본부(인천)	A/S	안양표지소 VOR/TAC 현대화	5	식	2023-03-14	1,770
합계							28,972

주: 항공기이동지역(국유지)에 공사가 투자하였으나 국가 귀속 대상이 아닌 준공시설물 별도(계류장 재포장, 유지보수 등)

자료: 국토교통부